

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7. 7. 26.>

(앞쪽)

제	호
기부금품모집 검사공무원증	
소속:	20mm x 30mm
직위:	
성명:	
생년월일:	
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기부금품모집 사무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	
년 월 일	
(행정안전부장관, ○○시장 또는 도지사)	

74mm×52mm(백상지 150g/㎡)

(뒤쪽)

※ 주의사항
1. 이 검사공무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기부금품 모집검사를 목적으로 모집자의 사무소·모집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할 때에는 이 검사공무원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.